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황 동 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4
----------	---------

발의연월일: 2021년 2월 일

발 의 자: 황동현, 경기문, 이종숙, 윤유선
김동협, 최동철, 이충현, 김현희
박주선, 김성한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강서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다.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바. 교육 및 행사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아.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나.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다. 입법예고: 2021. 2. 19. ~ 2. 24.

결 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행사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 시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 18.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략)

[전문개정 2011. 6. 8.]